

# MUST 사업안내 및 회원가입 신청서

## I MUST 개요

### 1. MUST 개념

- (개념) 기업육성기관, 투자사(AC·VC), 금투업권(증권사·자산운용사 등)으로 구성된,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기반 네트워크

MUST : Meet Understand Share Trust

만나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유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투자기반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반드시 혁신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도 내포

### 2. MUST 운영

- (주최) 부산시·금융투자협회 / (운영) 금융투자협회
- (회원) 기업육성기관, 증권사, 자산운용사(전문사모포함),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등

### 3. 추진배경 및 운영목표

\* 부산시-금융투자협회, 혁신·창업기업과 자본시장의 상생발전을 위한 MOU 체결('19.9.3)

#### 【추진 배경】

- ① 자본시장(금투업계)과 지역 실물경제의 만남의 장 마련
- ② 혁신기업에 대한 탐색비용 최소화 → 기업육성기관·투자사 연계 딜 소싱
- ③ 기타 투자사(AC·VC)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투자단계별 투자연계
- ④ 다수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함께 참여해 투자 시너지 효과
- ⑤ 직접투자 및 운용 포트폴리오 편입기업 다양화

#### 【협회·부산시 운영 목표】

- ① 투자기반 네트워크를 통해 혁신기업을 발굴하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토탈금융서비스 제공
- ② 행사성 IR을 벗어나 기업선별부터 투자협약까지 심도 있게 진행
- ③ 지역기업 성장 뿐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해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환경 조성

#### 4. 주요사업 및 운영주기

- ① (MUST Round) '혁신과 파급' 두 키워드를 충족하는 기업 성장을 통한 경제발전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비공개 IR·라운드테이블 개최(분기)
  - 기업선정협의회(Must Pick)를 통해 엄선된 기업을 선정하여 투자 유치 및 시장진입 등 기업에 맞는 자금조달 수단 타겟팅 구체화
- ② (MUST Edu) 혁신·창업기업이 초기~IPO에 이르기까지 지속 성장 가능토록 기업금융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③ (자본시장활용도 제고) 혁신기업 성장발판으로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K-OTC), 자본시장 혁신과제(BDC 등)을 활용

→ MUST를 통해 기업이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교육·발굴·투자 사업 간 연계 및 체계화를 지향



- ① (MUST Round·Edu 운영주기) 분기·수시 (비공개)
- ② (Must Round 참여대상) 기업육성기관 AC·VC·증권사·자산운용사(전문사모) 등
- ③ (Must Edu 교육대상) MUST Pick에서 선정된 혁신·창업기업

## II

## 회원가입 신청서

회사명	
회원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업육성기관 <input type="checkbox"/> 투자자
기업육성기관 분류	<input type="checkbox"/> 민 간 <input type="checkbox"/> 공 공
투자자 분류	<input type="checkbox"/> 액셀러레이터 <input type="checkbox"/> 벤처캐피탈 <input type="checkbox"/> 증권사 <input type="checkbox"/> 자산운용사(전문사모 포함) <input type="checkbox"/> 기타
회사 주소	

※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투자자 회원은 인가 및 등록이 표기된 라이선스(필요시)

상기 회사는 MUST 운영 기본방향을 숙지하였으며,  
MUST 회원으로 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 비밀유지 서약서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로부터 MUST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받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한다.

제1조 (목적) 본 서약서는 아래 당사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MUST를 통해 기업관련 정보 공유 및 거래업무 등을 진행함에 있어 제공받은 제반 정보나 자료를 입수·활용하는데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나 자료 등 일체의 사항은 MUST를 통한 기업관련 정보 공유 및 거래업무 등을 위한 투자판단 참고자료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 수령자는 해당기관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동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토록 할 수 있고, 동 정보에 접근한 모든 임직원에게 기밀을 지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정보의 취급) 정보 수령자는 정보 제공자와 주식 등의 거래업무가 종료(거래 성사 또는 거래 미성사 확정 등)될 경우, 정보 제공자로부터 받은 모든 정보와 동 정보의 모든 복사본 및 파생물을 정보 제공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업무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우라도 정보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시 모든 정보와 동 정보의 복사본 및 파생물 등 일체의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제4조 (비밀유지 등 의무기간) 본 서약은 서약서 제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서약을 통하여 정보 제공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에 대한 정보 수령자의 비밀유지 의무 및 무단 사용 금지 기간은 제공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 (기타) 정보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 수령자에게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정보 수령자는 본 서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정보 수령자 또는 그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보의 부당한 공개 또는 유출로 정보 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서약서는 MUST 회원가입서를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상기 비밀유지서약서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직인)

**제1조 (정의)** MUST는 기업과 투자자가 서로 만나서(Meet), 이해하고(Understand), 기업가치와 투자정보를 공유하며(Share), 신뢰를 쌓아(Trust) 함께 성장하는 투자기반 네트워크 플랫폼을 말한다.

**제2조 (목적)** MUST를 통해 혁신·창업기업과 자본시장 및 투자자의 만남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기업성장을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한다.

**제3조 (기관간 역할 및 주요사업)** ① MUST 관련 사업은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MUST 운영기관은 금융투자협회로 정한다.

② MUST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비공개 IR·라운드테이블(이하 'MUST Round'라 한다) 개최

2. 혁신·창업기업의 Finance 측면의 성장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인 혁신성장자본 조달 교육(이하 'MUST Edu'라 한다) 운영

3. 혁신·창업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금융투자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업

4. 기타 MUST 회원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MUST 운영기관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투자산업 발전을 위해 MUST와 관련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기업선정협의회(이하 'MUST Pick'이라 한다.)를 통해 MUST 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

④ MUST 운영기관은 MUST의 투자실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통계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회원의 가입 및 승인)** ① 회원이 아닌 자는 MUST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원가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법인이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회원가입의 승인은 MUST 운영기관이 한다.

**제5조 (회원의 구분)** ① 회원은 기업육성기관 회원과 투자자 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기업육성기관 회원은 혁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2.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5.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창업지원기관

6. 기타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가 인정하는 기업육성기관

③ 투자자 회원은 투자를 통해 기업성장을 촉진함으로써 투자문화조성과 금융투자 산업 발전 등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성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6. 기타 MUST 운영기관이 인정하는 투자자

**제6조 (회원의 역할)** ① 기업육성기관 회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하고 있는 기업을 MUST Round에서 기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MUST Pick에 추천
2. 투자선순환 구조 확립과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 투자한 기업을 MUST Pick에 추천
3. 기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MUST Edu에 참여기업을 추천
4. 기타 MUST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② 투자자 회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MUST Round에 참여하여 투자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2. MUST Round가 심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에 필요한 의견 개진
3. MUST Edu 참여기업 추천
4. MUST Edu 교육 지원
5. 기타 MUST 운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추천한 기업이 MUST Pick에서 선정된 경우 MUST Round 개최 시까지 기업관련 정보를 제 삼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투자자 회원은 MUST를 통해 투자집행 시 금융투자협회에 7일내에 거래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MUST Pick의 역할 및 구성)** ① MUST Pick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한 금융투자산업 발전 및 투자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MUST Round에 참여할 기업선정
2. MUST Edu에 참여할 기업선정
3. MUST 운영 기본방향 변경에 관한 심의
4. MUST 제재심의위원회와 관련한 기타 주요 의사결정
5. MUST 사업과 관련한 기타 주요 의사결정

② MUST 운영기관은 기업선정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기업육성기관 회원 중 일부 회원으로 MUST Pick을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제재)** ①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회원의 자격과 관련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제재는 회원자격의 박탈(제명조치), MUST 참여기간 제한으로 하며, 제7조를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회원 제명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는 회원의 제재와 관련한 결정을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재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부산시와 금융투자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